

의안번호	2210010
의 퇴 인	박지원의원
회 답 일	2025.4.30.
추 계 번호	25D240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4제1항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에 국외에서 발행된 외국 법인의 주식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의4제1항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에 “국외에서 발행된 외국법인의
주식(이하 ”해외주식“이라 함)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개대상자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외주식이
주식백지신탁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
장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고시¹⁾함에 따라, 해외주식은 백지신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1)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고시 제2005-1호(2005.12.16.)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8항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직무관련성 심사 현황,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회의·직무관련성 심사·예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회의개최		11	14	12	12	12	61
직무관련성 심사	심사청구	598	813	706	809	899	3,825
	결과통지	598	813	706	809	899	3,825
직무관련성 심사 예산(천원)		44,820	44,220	69,775	69,415	69,415	297,645

자료: 인사혁신처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개정안에 따라 해외주식이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재정소요의 구체적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해외주식 보유현황(종류, 가액 등), 직무관련성 조사 비용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 인사혁신처는 현재 백지신탁 대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주식과 달리 정보접근과 해당 기업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직무관련성 조사 비용이 국내주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단가를 예측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

I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